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77
----------	-------

발의연월일 : 2025. 9. 1.

발 의 자 : 조인철 · 장종태 · 최혁진
박수현 · 박용갑 · 이개호
서삼석 · 정준호 · 고민정
한정애 · 이건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에 대해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총기 제조법과 작동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총기사고로 이 서면의결을 할 수 없어 해당 정보의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도박·사행성 정보 등 다른 유형의 명백한 불법정보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총포·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회의 등) ① ~ ③ (생략)	제22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 ----- ----- ----- -----.
<신 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신 설>	2.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

<u><신 설></u> ⑤ ~ ⑦ (생 략)	<u>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u> <u>의 정보</u> 3. 「<u>총포·도검·화약류 등의</u> <u>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에 따 <u>른 총포·화약류(생명·신체</u> <u>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u> <u>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u> <u>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u> <u>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u> <u>정보</u> ⑤ ~ ⑦ (현행과 같음)
--	--